

제265회 임시회  
광진구의회

#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10. 24.

## 기획행정위원회

#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35
----------	------

2023. 10. 24.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10. 10.
- 나. 회부일자 : 2023. 10. 19.
- 다. 상정일자 : 2023. 10. 23.

## 2. 안건설명

가. 제안설명자 : 광진구청장

나. 제출사유

광진구 노동복지센터는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노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복지시설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분야에 적절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시설 개요

- 센터명 :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 운영개시 : 2017년 10월 19일
- 운영장소 : 광진구 자양로 116, 209호(웰츠타워, 구의동)
- 시설면적 : 84.93㎡ (26평, 사무실, 교육장, 소회의실, 상담실)

○ 주요위탁 내용

- 위탁사무명: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 위탁대상 : 근로자 복지증진, 노동관련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노동분야에 적절한 능력을 갖춘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 위탁사무 내용 : 노동자 교육 및 상담 등 법률지원, 노동교육 및 근로자 문화·복지 사업, 정책개발 조사 연구사업 및 기타 노동복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모에 의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

- “재위탁”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공고 → 민간위탁선정위원회 개최 → 위탁업체선정 및 협약 체결
- “재계약”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  
위탁 기간 만료 전 협약 체결 → 선정 결과 및 위탁사항 공고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연도	계	시 비	구 비	비 고
2023년	418,065	174,928	243,137	※ 참고사항 산출내역 참조
2024년	411,615	108,000	303,075	- 시비 : 인건비, 사업비 등
2025년	411,615	-	411,615	- 구비 : 사업비, 인건비, 임차료 등

○ 노동복지센터 운영현황

- 시 설 명 :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 운영인력 : 4명(센터장 포함)
- 수탁기관 : 민주노총 서울본부 광진구지부
- 위탁기간 : 2020. 10. 19. ~ 2023. 10. 18.

※ 위탁기간 연장예정: 2023. 10. 19. ~ 2023. 12. 31.(74일)

-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협약체결 등)
-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구 분	1회차	2회차	3회차(안)
기 간	2017. 10. 19. ~ 2020. 10. 18.	2020. 10. 19. ~ 2023. 10. 18.	2024. 1. 1. ~ 2025. 12. 31.
수탁기관	민주노총 서울본부 광진구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광진구지부	-

- 2023년 소요예산 산출내역: 41,8065천원(시 174,928천원, 구 303,075천원)

구 분		예산액(천원)	사업내용
<b>총 계</b>		<b>418,065</b>	
시/구비 (민간위탁금)	인건비(시/구비)	224,452 (시 109,249 / 구 115,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 직원 인건비 지원</li> <li>·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li> <li>·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li> <li>·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li> <li>· 취약계층노동자 노동법률 지원</li> </ul>
	운영비(시/구비)	10,880 (시 5,080 / 구 5,800)	
	사업비(시/구비)	125,199 (시 60,599 / 구 64,600)	
	<b>소 계</b>	<b>360,531</b>	
구비	일반운영비	47,534	· 임차료 및 관리비
	연구용역비	10,000	· 위탁기간 만료 따른 종합성과평가 추진
	<b>소 계</b>	<b>57,534</b>	

- ※ 2024년도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방향(시 노동정책담당관, '23.7.11.)
- ⇒ 구립 노동복지센터 시 보조금 단계적 축소
- 보조비율 : 2023년(50%) → 2024년(30%) → 2025년부터 지원없음

##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자복지시설의 운영위탁),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이경수)

- 의안번호 제2135호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0월 10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0월 19일 기획행정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 주요내용으로는

- 「근로복지기본법」 제 28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는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노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복지시설로,
- 노동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모에 의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통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및 노동조합에 노동자 교육 및 상담 등 법률지원, 노동교육 및 근로자 문화·복지 사업, 정책개발 조사 연구 사업 및 기타 노동복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을 위탁하고자 함.

##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노동복지 종합서비스인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분야에 적절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3회차마다 구의회 동의)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타당한 안건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 5. 토론

- 회의록 참조

## 6. 심사결과

-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